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기 초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기초연금 수급권자,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·질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·질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26. ~ 1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·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·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「국민연금법」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후단 중 “도지사”를 “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

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· 절차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 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·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특별자치시 · <u>특별자치도</u> ·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은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 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 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5조(조사 · 질문의 범위 · 시기</p>	<p>제13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·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특별자치도지사</u> <u>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</u> <u>인 시 ·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</u> <u>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특별자치도(관</u> <u>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</u> <u>시 ·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</u> <u>외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조사 · 질문의 범위 · 시기</p>

등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23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(생략)

② 국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지급한다.

1. 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24조(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) ① (생략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
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·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·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「국민연금법」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제23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특별시·광역시·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)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
③ (생략)

-----.

-----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)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72